

## 교육과정 개정에서 법교육 축소·통폐합에 대한 반대 성명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사회과 교육과정의 일반선택 과목에 대한 대폭 조정이 예견된다. 역사, 지리, 윤리, 일반사회 과목군이 복잡하게 혼재된 사회과의 학문 구조 특성상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전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반선택 과목에 대한 대폭 개정 논의에서 법교육 영역이 축소 또는 부당하게 통폐합될 우려가 있어 우리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 1. 우리 학회의 입장: 법교육 영역의 축소 또는 통폐합에 단호히 반대한다.

법교육 영역은 2009 개정, 2015 개정을 거치며 독립 과목이었던 <법과 사회>가 <법과 정치>로, 다시 <정치와 법>으로 변화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축소, 통폐합되어왔다. 법교육 위상 회복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정상화가 절실한 현시점에서, 도리어 법교육의 축소나 또 다른 통폐합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 <정치와 법> 과목 체제에서도 법교육은 심각하게 위축되어 일반선택 과목 취지와 효과 측면에서 많은 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과목 축소 논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과정에서 범영역이 <경제> 또는 <사회·문화>와 부당하게 통폐합될 수도, 아니면 일반선택 과목 내에서 심각하게 축소될 수도 있다고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논거로 이러한 법교육 축소 또는 통폐합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한다.

### 2. 우리 주장의 근거: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법교육은 필수적이다.

#### (1) 법교육은 민주시민교육 및 사회과교육의 중핵 과목이다.

민주시민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을 기르는데 핵심적이다. IMF 경제 위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시민들은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기초로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오고 있다. 우리 사회가 위기에 처할수록 숭고한 시민의식은 더욱 빛을 발해왔다. 초·중·고 사회과교육과 학교 안팎에서 행해지는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사회의 품격과 의식을 제고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왔다.

관련하여 법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중핵 과목으로서 법치주의 사회 민주시민 양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법교육은 단순히 법 조항을 암기하고 기능적 의미의 법을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과목이 아니며,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법의식 함양을 토대로 하여 민주시민의식을 직접적으로 학습하는 핵심 과목이다. 법교육은 헌법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법규범과 법현상에 대한 이해, 법치주의 사회에 대한 긍정적 효능감과 참여적 태도 형성에 매우 큰 효과가 있다. 따라서 시민교육이 헌법을 포함한 공민적 내용(civics)을 중심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 **(2) 법은 곧 인권, 법교육은 곧 '인권교육'이다.**

인류 역사의 진보는 인권 보장의 확대와 직결된다. 인권교육은 사회 진보를 위한 필수 수단인 바,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인권교육을 법교과 학습 주제로 설정하여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을 추상적, 관념적으로 접근하는 등 인권교육의 실천에서 다양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법은 인권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권을 법적 담론(개념, 가치, 사례 등)과 연계하여 가르쳐야 극대화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을 통해 인권은 구체화되고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타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습득하는 것은 법교육의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 **(3) 현대 민주법치국가에서 법교육은 필수적이다.**

현대사회에서 법은 사회 구성과 운영의 핵심 기제이며, 사회가 다원화되고 갈등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그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현대사회는 법을 통한 지배, 즉 '법의 지배' 사회이며, 사회 모든 영역에 법이 관여하고 있다. 인권과 기본권, 헌법적 가치 외에도 범죄나 재산, 가족관계 등 시민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법을 통한 지식, 기능, 가치·태도가 필요하다.

한 사회의 구성 및 운영 원리가 법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법을 이해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법적 사고와 가치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교육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이다. 현대 민주법치국가에서 법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 과업이다.

## **(4) 법교육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독립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사회과 내에서도 특히 일반사회 영역의 각 과목은 서로 다른 모학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교육을 다른 학문과 무조건 통합하면 여러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 <정치와 법> 과목 내 이질적 학습 요소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교실 현장에서 시민교육의 중핵 과목인 <정치와 법> 이수자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교육의 이상과 실천이 중대하게 훼손되고 있다. 법 영역뿐 아니라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인류학을 기계적으로 통합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2022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이 고교학점제라면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일반선택 과목을 확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일반 선택 과목을 축소하겠다고 하니 우리는 이 교육과정 개정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정인지 묻는다.

#### **(5) 학교 현장에서 법교육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정치와 법> 과목 이수자와 미이수자 간에는 시민의식, 공동체 의식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미이수자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기본권, 헌법소원, 탄핵 소추, 상고 등과 같은 시사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정치와 법>은 이러한 개념과 원리, 사례 등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어 민주시민의 삶과 삶을 일치시키고 민주시민의 권리 실현과 보장에 직접적으로 효용을 가지는 과목이다.

국가-정부-사회-시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시민 생활에 필요한 개념을 제대로 학습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우리 공동체의 책무이다.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법교육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도리어 이를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퇴행이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훼손이다.

#### **(6) 법교육의 축소, 통폐합은 법교육지원법 취지에 반하고 시민 법교육까지 위축시킨다.**

고등학교 법교육은 <법과 사회>에서 <법과 정치>로, 다시 <정치와 법>으로 통합되어 그 입지가 좁아져 왔다. 학교 법교육의 위상이 흔들리면 정상적인 민주시민교육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의미 있는 시민 대상 법교육으로의 확장도 모색할 수 없다.

지난 2008년 제정·시행된 법교육지원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취지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학교는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이 학교 안팎의 공간에서 활발하게 전개해 왔으나, 반복되는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학교 법교육이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 법교육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국회가 민의를 수렴하여 만든 법교육지원법 제정 취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또한 법적 이해 능력, 합리적 사고력, 능동적 참여, 헌법적 가치관 등을 지향하는 학교 법교육의 역행은 사회 법교육, 시민 법교육까지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 **3. 법교육 진흥은 국가와 사회 시대의 요구이다.**

**(1)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유권자 교육에 법교육이 필수적이다.**

2020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18세 유권자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정확한 정보와 지식,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건전하게 공적 생활에 참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로써 법교육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게 될 청소년 및 일반 시민 대상 선거교육, 주권자교육이 부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리어 법교육을 축소하는 것은 특히 사회과교육 교육과정 형성의 중요한 원천인 국가와 사회,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2) 융합선택, 진로선택 과목의 신설은 일반선택 과목의 다양화, 심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체제에서 융합선택, 진로선택 과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융합선택, 진로선택 과목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일반선택 과목과의 연계, 심화가 적절하게 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선택 과목에서 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융합선택, 진로선택 과목에서 일부 내용이 다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반선택, 융합선택, 진로선택 과목이 다양하고 풍성하게 구성되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나, 현재 교육과정 개정 논의는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

**(3) 고교학점제 도입은 법교육을 포함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전제할 때 실효성을 가진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과목 선택권 보장을 전제로 한다.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데 독립 교과목들을 통합·폐지하겠다는 것은 앞뒤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다. 선택권 보장 명분의 고교학점제가 실제로는 선택 과목의 축소로 이어진다면 선택권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하겠다는 오히려 선택 과목을 늘려야 한다.

우리는 고교에 학점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선택 과목을 축소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묻고자 한다. 혹시 그 이유가 선택 과목 확대에 따른 교원 충원 및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 때문이라면 일단 학점제 도입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즉시 중단하고 재정 확보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지금보다 다양한 과목의 선택권 확보가 전제되고 또 그것이 가능한 때에 비로소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준비를 결여한 채 학점제를 강행하는 것은 도리어 고교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미래세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 4. 우리의 제안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학회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고등학교 사회과 일반선택 과목에서 법영역을 배제하거나, 다른 과목과의 기계적인 통폐합을 반대하며, 일반선택 독립 과목으로의 법교육 위상 회복을 요청한다.

둘째, 법영역을 포함한 인문, 사회 분야 학습 요소를 토대로 다양한 융합선택, 진로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일반선택 과목과의 연계·심화를 구조화하고, 학습자의 과목 선택권 보장, 고교학점제의 내실화를 요구한다.

셋째,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이행을 위해, 가칭 <시민> 과목을 구성하여 시민, 정부, 권리, 인권, 공동체 등의 공적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필수 교과, 독립 교과의 개설을 촉구한다.

2021. 7. 29.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